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12. 7. 오영세 의원 외 4인
- 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- 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- 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12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**연 정 수** 

# 

본 안건은 2009년 12월 7일 오영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개정이유

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·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의2).

#### 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과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를 권장하고,
  - 이를 이용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자에 대한 공사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,
-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